#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057 발의연월일: 2021. 12. 22.

발 의 자: 강준현 의원

찬 성 자: 강득구·강병원·강선우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김교흥 · 김남국 · 김두관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김병기 · 김병욱 · 김병주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김윤덕 · 김정호 · 김종민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김태년 · 김한정 · 김회재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박광온 • 박범계 • 박상혁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박용진 · 박재호 · 박 정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설 훈·소병철·소병훈 송갑석 · 송기헌 · 송영길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위성곤・유기홍・유동수 유정주 • 윤건영 • 윤관석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이개호 · 이광재 · 이동주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헌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용선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이인영 · 이장섭 · 이재정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정성호 · 정일영 · 정청래

정춘숙·정태호·정필모 조승래·조오섭·조승천 조정식·주철현·진선미 진성준·천준호·최기상 최인호·최종윤·최혜영 한병도·한정애·한준호 허 영·허종식·홍기원 홍성국·홍영표·홍익표 홍정민·황운하·황 희 의원(16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대통령과 일부 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집무실은 서울특별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 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 법률 제 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
획) ① ~ ③ (생 략)	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
	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
	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u>④·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⑥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u> </u>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u>제4</u>	<u>제5</u>
<u>항</u> 및 <u>제5항</u> 을 준용한다. 다만,	<u>항</u> <u>제6항</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	
항 및 <u>제4항</u> 을 준용하지 아니	<u>제5항</u>
한다.	